##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72 발의연월일: 2025. 2. 28.

발 의 자:김병기・윤종군・문진석

박상혁 • 장경태 • 이기헌

박홍배 • 천하람 • 서미화

박지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360조의24에 따르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 적 달성을 위해 다른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음.

그러나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으로 인해 소수주주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자본이득을 얻게 되어 조세 부과 등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주주로서 가지는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이 익도 상실하게 되며, 지배주주는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을 택하여 소수 주주를 축출한 뒤 향후 회사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그 이익을 독점하 려 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작용이나 남용 여지가 크므로 그 행사 요건 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행의 "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"에서 "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

99 이상"으로 보다 엄격히 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60조의24).

법률 제 호

##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0조의24제1항 중 "100분의 95"를 "100분의 99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0조의24(지배주주의 매도청	제360조의24(지배주주의 매도청
구권)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	구권) ①
의 <u>100분의 95</u> 이상을 자기의	<u>100분의 99</u>
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	
(이하 이 관에서 "지배주주"라	
한다)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	
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	
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(이하	
이 관에서 "소수주주"라 한다)	
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	
를 청구할 수 있다.	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